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2025. 8. 26.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80호로 2025년 8월 14일 최봉희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을 관내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 및 제공자·사업자의 책무 (안 제4조~제5조)

다.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안 제6조)

라.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안 제7조)

마.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위탁 (안 제8조)

바. 보조금 지원 (안 제9조)

사.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 (안 제11조~제12조)

아. 교육·홍보 (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기존 예산으로 사업 일부 추진 중이며,
향후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 추가 반영 필요

다. 입법예고(2025. 8. 14.~2025. 8. 21.)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제정 배경 및 취지

- 최근 고용시장 침체와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여건 악화로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에 따라 기부를 통한 사회안전망 보완과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한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1) 제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식품등 기부와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2)16개 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함.

1)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강남구,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중랑구

- 이에 본 조례안은 기부문화 확산과 안정적 기부활동 지원을 위해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전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는 ‘식품등’, ‘기부식품등’,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 등 주요 용어를 규정하여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확보함.
-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기본 조례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함.
- 안 제4조(구청장의 책무)는 법 제7조에 따라 시책마련 및 예산확보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적정히 규정함.
- 안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는 기부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3)법 제5조에 따라 규정함.
- 안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는 무상제공, 공정·투명한 배분과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공원칙을 명시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안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는 구청장이 매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활성화 및 지원, 관리·운영 방안, 지도·감독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담보하고자 함.
- 안 제8조(제공사업 위탁)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사회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3)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②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안 제9조(보조금 지원)는 법 제7조 및 4)제9조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안 제10조(협조요청 등)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결연을 통해 기부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 안 제11조(지도·감독)는 5)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2조(실태조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3조(교육·홍보)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기부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 안 제14조(표창)는 식품 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법인·단체를 표창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 참여를 장려하고자 함.

4) 제9조(이용자 보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5) 제10조(지도·감독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장려 의무를 구체화하였으며,
 -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기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체계화함.
-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식품등 기부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부활동이 단순 물품 전달을 넘어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공동체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됨.

참고 자료

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기부식품등의 모집·관리 및 제공
2.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②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②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보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시정명령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제3조제7항에 따른 신고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때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장표시물의 제거·삭제

2.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사업장의 시설물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는 용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같다.

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4항에 의한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⑧제4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생활용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물품을 말한다.

제2조의2(사업자)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2. 매주 60명 이상에게 제공할 것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3.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